



제309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  
제1차 자치행정위원회

**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**

**일부개정조례안**

[김동훈 의원 대표발의]

**검 토 보 고 서**

2025. 2. 5.

**자치행정위원회**

#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4일 김동훈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-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규정 마련(안 제4조)
- 나.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 (안 제5조의2)
- 다. 시 발주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관내 기업 생산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 마련(안 제8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- 다. 관련부서 : 지역경제과
- 라. 입법예고 : 2025. 1. 24. ~ 2025. 1. 31. (7일간) / 의견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,

지역 내 중소기업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,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함으로써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구매 계획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
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,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물품, 용역, 공사 분야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**☑ 「중소기업기본법」**

**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7조(판로 확보)** ① 정부는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(調達)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(受注)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(販路)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☑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**

**제4조(구매 증대)**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·용역 및 공사(이하 “제품”이라 한다)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(受注)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공공기관의 장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(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**제5조(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)**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.

- ②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(이하 “중앙회”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「국가재정법」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,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,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,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통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.
- ⑦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조달청장에게 제6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## ☑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4조(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) ①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장은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부 수요물자 중 내자(內資)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설공사계약을 대상으로 하고,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의뢰한 계약과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·용역 및 공사(이하 “제품”이라 한다)를 대상으로 하되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

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별 연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
**제5조(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)**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
2. 물품별·공사별·용역별 구매목표액
3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(이하 “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”이라 한다)의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
4.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
5.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
6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(제품의 구매실적이 처음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)
2. 전년도 공사의 구매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제품의 제품별 직접 구매실적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

### 4. 작성자

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장 임대훈